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중기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62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발 의 자 : 성중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소양, 김진수, 송도호,
여 명, 우형찬, 이광호,
이석주, 이성배, 이승미,
이은주, 이종환, 정진철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
- 이에 복지관, 경로당,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, 도시공원,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, 필요시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토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의2)
- 나.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노인·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의 “보행우선구역” 또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“보행환경개선지구”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노인·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·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 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·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6조의2(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노인·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의 “보행우선구역” 또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“보행환경개선지구”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노인·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·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</p> |

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조치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조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·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·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2021051800000016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요청인 : 성중기 의원 | 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조예진 예산분석관 |
| 접수일 : 2021.05.18 | |
| 회신일 : 2021.05.26 | 내용문의 : 010-9040-7980 |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(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를 신설함에 따라,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비용 발생
- 단, 같은 조례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및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(보호구역의 지정)에 따라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지출의 순증가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(‘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개선’ 사업설명서 첨부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≒1,892,334천원

- 총 비용≒1,892,334천원(연평균 378,467천원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1차년도 (2022년) | 2차년도 (2023년) | 3차년도 (2024년) | 4차년도 (2025년) | 5차년도 (2026년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입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비용 (안 제6조의2)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1,892,334 | |
| | 소계(b)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1,892,334 | |
| □ 총 비용(b-a) |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866,667 | 53,000 | 1,892,334 | |

다. 전제

-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은 대부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,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역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
-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은 추계기간동안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는 ‘21년 신규 사업대상 4개소의 10% 이상(0.5개) 신규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
 - ‘21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(자치구 공모사업)은 1년 사업 3개소, 2년 사업 1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(‘20년 2년 사업 3개소 제외)
 - ‘21년 기준, 서울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은 총 154개소 지정
-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은 2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보행환경개선사업(자치구 공모사업)의 1년 사업 및 2년 사업 구분은 시비 지원 10억원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
 - 그러나 ‘21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예산안에 따르면, 1년 사업비는 평균 324,333천원이고 2년 사업비는 평균 919,667천원으로 비용 격차가 크므로, 비용의 과소추정 방지를 위해 최대값을 활용하여 2년 사업비를 적용
 - 2년 사업비는 1차년도 설계비용 및 2차년도 공사비용의 총합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 설계비용 추계
- 안 제6조의2제4항에 따라,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반을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에서 제외

다. 추계기간

- 5년(2022년부터 2026년)

라. 방법

- ‘21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의 예산 적용

마. 세부추계내역

○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비용≒1,892,334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보행환경개선지구조성사업비용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2~2026년)

-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비용 = 설계비 + 공사비

① 설계비

= 53,000천원 × 3회(2022년, 2024년, 2026년 각 1회 발생)

= 159,000천원

② 공사비

= 866,667천원 × 2회(2023년, 2025년 각 1회 발생)

= 1,733,334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석관 조예진

☎ 010-9040-7980

e-mail : stvery5@seoul.go.kr